

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손윤목

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6년 10월 3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일부개정(2016. 7.12)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교환차금·대부료·매각대금의 할부 이자율,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 및 과오납금 이자율을 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함.
(안 제22조제1항 및 제2항, 안 제35조제2항, 안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제4항, 안 제40조의2제1항 및 제2항, 안 제62조, 안 제63조)
-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일부 조항 삭제에 따른 인용 조항 삭제
(안 제28조)
- 대부료 감면조례 개정에 따른 대부료 감면규정 추가

(안 제32조 제3항 및 제4항)

-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의거 수의매각 사유 정비(안 제40조)
- 토지 평가액 등 평가 가능한 감정평가자의 범위를 감정평가 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확대(안 제66조)

4.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를 이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임.
-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
 - 종전에는 교환차금이나 전세금, 변상금, 매각대금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연 4퍼센트에서 6퍼센트 이자율을 붙여서 납부하도록 하였으나,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고,
 - 토지 평가액 등 평가 가능한 감정평가자의 범위를 감정평가 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
 -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의거 수의매각 사유를 정비하는 것임.
-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례 개정에는 이견이 없으나 2016년 7월 12일에 개정된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이 이자율을 시중은행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 것은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이므로 신속하게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됨.

붙임: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